「양산 덕계 경동스마트홈」우선분양전환 공가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사항

- 당첨자의 방문 및 당첨 세대 방문 시, 준수사항
- (당첨자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세대 방문이 제한됩니다)
- 당첨 세대 방문시, 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37.2도가 넘을 경우 입장 제한)
- 손 소독제 사용, 체온 측정 등 감염 예방 수칙 적극 협조바랍니다.
-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세대 개방 및 서류 접수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9.1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른 5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되어 우선분양전환 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한 공가잔여세대를 우선적으로 일반세대 177세 대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14년 1월 16일 사용승인(준공)된 종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되어 우선분양전환 후 분양포기세대를 일반공급하는 것이며, 공급금액은 양산시 공동주택과-20645호(2020.06.15)로부터 분양전환 승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목문, 기타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및 청소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주택개방일(※당첨자에 한함)에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방식으로만 공급하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당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당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분양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최하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니, 최하층을 우선 배정받고자 하실 경우 청약시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하층 우선배정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하층 우선배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 1.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 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가 입력(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청약저축 가입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당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전산관리지정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각 세대별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14년 1월 16일 사용검사를 득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이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세대당 융자금 59.9758㎡는 48,500,000원, 59.8810㎡는 48,500,000원, 84.4175㎡는 67,8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며,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18)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 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전추첨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른 국민주택으로써, 일반공급 제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2항의 순차별 공급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이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실 경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홈페이지(www.kdsh.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특별 공급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분양사무소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함

- 동일세대에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청약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재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제3조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 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한국감정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부적격당첨)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며,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거주제한기간이 있는 주택건설지역인 경우 작성] 2019.11.01. 신설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 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 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판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역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재당첨 조회 등의 확인을 위해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세대'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공급	일빈	·공급		
구분	기관추천,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
일정	2020.09.28(월)	2020.09.29(화)	2020.10.05(화)	2020.10.12(월)	2020.10.23(금)~2020.10.27(화)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소	■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한국감정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경동스마트홈 분양사무소 202동 101호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경동스마트홈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공동주택과 제 호 (2020.00.0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신덕계로 34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1층 ~ 지상20층, 7개동 아파트 총 487세대 중 분양전환 후 일반분양세대 17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19세대(일반기관추천 19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37세대, 다자녀특별공급 19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37세대, 노부모특별공급 7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다위 : 면적-m², 금액-원)

주택	주택관리	무덱	주택형 약식 (전용면적기준) 표기	OFAI	주택공급면적(㎡)		기타 - 공용 면적 계약 세대별 #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저층			
구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지하주차장등)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추천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세대스	우선배정 세대수
_ ,		01	59.9758	59A	59.9758	23.4417	83.4175	18.7870	102.2045	41.5570	106	11	22	11	22	4	70	36	5
국민 주택	000000000	02	59.8810	59B	59.8810	23.8250	83.7060	18.7572	102.4632	41.4910	50	5	10	5	10	2	32	18	2
' '		03	84.4175	84	84.4175	26.5950	110.9253	26.4158	137.3411	58.4320	21	3	5	3	5	1	17	4	1
	합계									177	19	37	19	37	7	119	58	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관리번호	타입	동	호수	분 양 가	국민주택기금대출	계 약 금(10%)	잔 금 (90%)
	59.9758	101	1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2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3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3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4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4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5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5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6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6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8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8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0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0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0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1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2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2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3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4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5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5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6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8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8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9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20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1	101	1 1		12,491,200	1 1
			124,162,000	48,500,000		112,420,800
59.9758	102	3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2	4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2	5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2	8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2	9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2	13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2	14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2	15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2	16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2	18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2	18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2	19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2	20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2	20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8810	102	104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2	204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2	304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2	403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2	604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2	703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2	1003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2	1104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2	1203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2	1204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2	1304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2	1604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2	2004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1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2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3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4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6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1 23.0010		1	, - 50, 500	,000,000	, 100,000	,

59.8810	103	6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7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7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8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9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11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11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13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14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14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15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15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16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16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19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20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103	20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9758	103	9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3	10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3	11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3	13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8810	103	14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3	15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3	18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3	19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3	20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3	1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1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3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4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5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6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6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7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8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9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10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11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12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13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15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16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17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104	18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1 201	,,	10,000,000	12, 101,200	112, 120,000

84.4175	201	204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301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302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304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402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404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502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503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504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603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702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703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903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904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1104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1203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1303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1404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1603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84.4175	201	1701	166,681,000	67,800,000	16,668,100	150,012,900
59.9758	202	1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2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3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4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4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5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6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6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8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8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8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9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10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10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12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12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13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1302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13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1501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16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17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2	17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8810	203	2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3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3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5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6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7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7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10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11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11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12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13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15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1702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8810	203	1901	124,563,000	48,500,000	12,456,300	112,106,700
59.9758	203	4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3	8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3	9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3	10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3	12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3	1205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3	1305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3	1403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3	1405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3	15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3	1505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3	1605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3	1704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59.9758	203	1805	124,162,000	48,500,000	12,491,200	112,420,800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충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공통사항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 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계약후 30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급금액에서 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른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당 아파트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주택형별 20%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당 아파트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다자녀가구(구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적용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10%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당 아파트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 및 결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적용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20% 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당 아파트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 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및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A	59B	84	합계	
	국가 유	공자	3	1	1	5
Olul/키리호원/트버코그	10년 이상 장기	기복무군인	2	1	0	3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	2	1	0	3
	장애덕	4	2	2	8	
생애최초 특별공급	-		22	10	5	3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1	5	3	19
신혼부부 특별공급	λ ⊑ η ⊼	우선공급(75%)	16	7	3	26
선본구구 국결중합 	소득기준	일반공급(25%)	6	3	2	1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4	2	1	7	
	합 계	70	32	17	11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세대주에 한정 공급함)

구분	내용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1 <mark>회</mark> 한정/ 자격요건/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됨.
지역표선/ 자격제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 권외 6개월,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기관추천 / 생애최초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무주택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구구역 표신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예치 금액 이상인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적용)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후 동시에 당첨 시 모두 무효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후 미계약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이후에 발생된 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12호에서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함.
- 현장 접수 시(당사 분양사무소 방문접수)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 청약 접수 시 무주택 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무주택기간 및 해당 시·도 거주기간에 관한 점수 산정 시 민법상 성년자(공고일 현재 만 19세)를 기준으로 하여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공고일 현재까지를 그 기간으로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수 없음.
- 2020년 2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문부터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며, 동·호수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충별 생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배정함.(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미성년인 자녀가 세명 이상인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함.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 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청약Home, 사업주체),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이내): 19세대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울산시청 장애인복지과,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 총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37세대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속한 모든자가 아래 ①~⑤호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내에 소득세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 오를 포함함.
- 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고그ㅇ참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100%)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120%)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8,326,025원	9,899,774원	10,686,649원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여야 함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 가구당 소득이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
- **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 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 양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제6조에 의하여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근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증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로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증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 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헙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ㆍ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제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자 영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ㆍ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업 자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u></u> 보	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ㆍ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	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ㆍ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총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19세대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자격으로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분에 한합니다.(기존에 특별공급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청약 불가함)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 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이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양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9.9 F.T.	<u> </u>	기준	점수	이호			
계	100						
미성년 자녀수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40	미성년 자녀 4명	35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1)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15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		자녀 중 영유아 1명	5				
		ગમાના ગામ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세대구성	г	3세대 이상) 5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3)	5	-1111-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		한부모 가족	5	자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	00						
(4)	20	11d olik Fid plpk	10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			
해당 시·도 거주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	1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5)		1년 이상 ~ 5년 미만	5				
0] ズェ]ェ] ネョ] 0]ョ]ョ]				시.도로 본다.			
입주자저축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6)		[기계조대기그 참이/이층 제층이 거이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금액 지급 없이 원금만 환불합니다.
- ※ 당첨 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37세대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대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 부여(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가입기간 6개월 이상/예치금 충족)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 적용)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 처분하고 무주택기간 2년경과 포함)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770 A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u>ਨੇ ਜ਼</u>	공급유형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6,665,980원	6,226,343원 ~7,471,610원	6,938,355원 ~8,326,025원	7,594,084원 ~9,899,774원	8,249,813원 ~9,899,774원	8,905,542원 ~10,686,649원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7,221,478원	7,471,611원 ~8,094,245원	8,326,026원 ~9,019,860원	9,112,901원 ~9,872,308원	9,899,775원 ~10,724,756원	10,686,650원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05,805) * (N-8) ◆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 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 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기타 자세한 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특별공급 신청접수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전체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7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 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 자(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 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유주택자로 봄(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표1>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③ 저축총액이 동일할 경우 추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접수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18)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민법」상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단,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양산시 거주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신청

자격요건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 됩니다.[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동별, 층별, 향별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40%에 미달 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4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음.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함.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재사용 불가함.
- 본 아파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첨사실 삭제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화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를 반드시 방문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접수마감 후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일반공급 1,2순위 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공급유형(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 히 숙지하시고 유의

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 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거주개시일(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 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청약신청 유의사항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 요건

구분	주택형	신청구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국민	전주택형	1正刊	납입한 자.
주택	선구역성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자(가입 후 경과기간 및 월납입금 납입 횟수와
			상관없음)로써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는 자.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은행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동일 순위내 경쟁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③ <표1>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 관리지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l>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함.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기간 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및 무주택기간 인정기준」참조)
- <표1>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 사항

본 아파트의 신청자격인'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따라 소명기간(사업주 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 함.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증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 되기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중 한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함.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예시)

구 분	해당사항
무주택 기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4년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임. 예시3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임. 예시4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9.28(월) (www.applyhome.co.kr : 08:00~17:30) (분양사무소 : 10:00~14:00)	• 인터넷 청약 (청약홈)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202동 101호
	1순위	2020.09.29.(화) 08:00~17:30		•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2순위	2020.10.05(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엡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 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가능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 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특별공급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 •방문 제출시 유의사항
- 방문 제출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 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수도권 및 투기·청 약과열지역 1년, 수도 권외 6개월, 위축 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 의 착오신청 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서류제출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구분	서 후 필수	루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0		특별공급신청서,		* 무주택 입증 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분양사무소
			무주택 서약서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비치
고토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공통	U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 !!		 - 신청자 구비
서류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 인감도장 생략	
	0		주민등록증	본인	* 또는 여권	
	0		청약통장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가입은행 및 한국감정원
-						분양사무소
	Ο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본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비치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신청자 구비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Ο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요망(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0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본인	* 분양사무실 비치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분양사무소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지나이 저번 때도 이번가 보이 지미드로교트병 사에 드레디지 아이 건이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11=1=1 = 11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의 혼인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 구비
다자녀 가구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
		0	친양자 입양 관계	(또는	* 입양의 경우	
			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배우자) 본인 (또는		분양사무소
		0	확인각서	관한 (포는 배우자)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고양시구조 비치
	Ο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뿌	0		소득증빙서류	이상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 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신청자 구비

		0	재직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분양자무소 비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비사업자의 경우)	
	Ο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분양사무소 비치
, 40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대	0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소 비치
리인신 청시추	0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 신청자 구비
	0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가사함 '	0		주민등록증	대리인	또는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인장	대리인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당사 양산 분양사무실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 처리됨.

- ※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다 자녀가구,노부모부양	• 일시: 2020.10.12.(월)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일시 : 2020.10.23.(금)~2020.10.27(화) 3일간,10:00~16:00
	1순위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양산 분양사무소 202동 101호
일반공급	2순위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경남 양산시 신덕계로 34 경동스마틀홈 분양사무실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감정원 '청약홈'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하며, 개별서면 통지는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단, 상기 계약체결 시까지 주택소유여부 등의 전산검색결과가 미확정시에는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계약체결하되, 계약 체결 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납부한 계약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입금 한 후 무통장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하며, 계약당일 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는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1.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	간	2020.10.12.(월) ~ 2020.10.21.(수), 10일간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인터넷	<u></u>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제공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20.10.12.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주자를 선정하고 남은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선정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
	별 전체 신청자수가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
	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일반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
	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 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양사무실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분양사무실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 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

유의사항

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 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 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	타입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59A,59B	1005-703-990832	㈜경동산업
경남은행	84	232-0001-3701-08	㈜경동산업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사무소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분양사무소 현장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2동 702호 계약자 → '102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시 구비서류

		유형			
구분	추가		-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1 4	필수	' ' (해당자)	311 0 . 1 11	28 15	11 7 1 8
공통 기본서류 (특별공급 포함)	0	(9) (5) (1)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_	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0		서약서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가점제 당첨, 1순위 추첨제(무주택자, 1주택(처분요건) 당첨자 등)] 서약서 작성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Ο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0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 인감도장 생략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0		7 N C 2 7 C Y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0		출입국 사실증명원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요망(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EHJJ	0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본인	에다 돈버고그 자러 가른 기찬(가층바바 돈버고그이 거요 샤도즈메기를 표합되며 바다가줘요 한 기). 케이)
특별공급			구비서류		해당 특별공급 관련 서류 지참(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증명서류 포함하며, 방문신청을 한 자는 제외)
일반공급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직
추가서류					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1순위 당첨자)				속	하는 경우
		0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	복무기간(10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인터넷 청약접수시 제출생략)
			명시된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경상북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계약시 및 인감도장	_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U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0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외국인등록
		0	위임장		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0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LONE NIT	I	

-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주민등록번호","세대주 성명 및 관계"및"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주민등록번호","세대주 성명 및 관계"및"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 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상기 구비서류 외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이중담청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 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소득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상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담청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공급가격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도 포함)
- •입주자저축 사용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입주예정일 : 잔금납부후 45일 이내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실입주 지정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음.

Ⅵ 기타 유의사항 등

- •청약 및 계약 전 아파트 주변 혐오시설 유무, 진입로 등 도로여건, 인근 건물 신축계획, 소음, 조망, 일조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기 바람.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입주시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가산금리 주1)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여신금리 주2)	연체금리
3%	2.89%	5.89%

- 주1) 가계대출 최상위은행의 가산금리
- 주2) 한국은행 발표(2020.04.30기준)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여신금리
- •계약자 본인사정에 의하여 잔금대출이 불가한 분은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일자에 대하여 별도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사항은 계약자가 직접 대출은행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부동산 계약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잔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대출 취급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름.
- 사업주체 : ㈜경동산업 / 부산광역시 연제구 온천천남로 187(연산동)
- 부대복리시설 : 1,2단지 통합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 분양사무소 : 경상남도 양산시 신덕계로 34 경동스마트홈 단지내 분양사무소 202동 101호
- 사 업 지 : 경상남도 양산시 신덕계로 34
- 분양문의 : 055-386-1733
-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